

여성가족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한편, 삭제 지원 대상을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 따라서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와 삭제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로 확대(안 제2조의6 제1항·제2항)

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2조의6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의 제목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촬영물”을 각각 “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6(<u>불법촬영물 삭제 지원</u> 내용 및 방법 등) ① <u>여성가족</u> <u>부장관</u> 은 <u>불법촬영물</u> 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의6(<u>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u> 내용 및 방법 등) ① <u>여성가족</u> <u>부장관</u> 은 「 <u>성폭력범죄의 처벌</u> <u>등에 관한 특례법</u> 」 제14조에 따른 <u>촬영물</u> 또는 <u>복제물</u> (복제 물의 <u>복제물</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u>촬영물등</u> ”이라 한 다)-----.
1. <u>불법촬영물</u>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1. <u>촬영물등</u> ----- -----
2. <u>불법촬영물</u> 유포로 인한 피 해 정보의 수집	2. <u>촬영물등</u>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u>불</u> <u>법촬영물</u> 의 삭제 요청 및 확 인·점검	3. ----- ----- <u>촬</u> <u>영물등</u> ----- -----
4. 그 밖에 <u>불법촬영물</u> 삭제 지 원과 관련하여 <u>여성가족부장</u> <u>관</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4. ----- <u>촬영물등</u> ----- ----- ----- -----
② <u>여성가족부장관</u> 은 <u>불법촬영</u> <u>물</u>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인 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② ----- <u>촬영물등</u> ----- ----- -----

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u>제1항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④ · ⑤ (생략)	----- <u>촬영물등</u> ----- ----- ----. ③ <u>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u> ----- <u>. 다만,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95